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議 案	
番 號	

提案年月日 : 1994. 3. .

提 案 者 : 政治關係法審議
特 別 委 員 長

1. 代案의 提案經緯

1993年 2月 19日 朴相千·趙淳昇·李沅衡·羅柄扇·姜秀淋·金忠賢議員外 89人이 發議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과 1992年 6月 5日 政府가 제출한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을 審查한 결과, 第166回國會(臨時會)第2次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1994年 3月 4日)에서 이를 각각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委員會의 代案을 提案하기로 함.

2. 代案의 提案理由

地方自治制度의 정착 發展을 도모하기 위하여 地方議會 運營의 效率性과 議員의 원활한 議政活動을 제도적으로 保障함과 동시에 地方自治團體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制度 新設, 市·郡을 統合하여 都農複合形態의 市를 設置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 都市와 農村間의 균형적인 發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타 地方自治制度의 施行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적 未備點등을 合理的으로 調整·補完하려는 것임.

3. 代案의 主要骨子

- 가. 現行의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이나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을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市에는 邑·面·洞을 두도록 함(案 第7條第2項 및 第3條第2項).
- 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별도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住民投票에 붙일 수 있도록 함(案 第13條의2).
- 다. 地方自治團體가 條例로써 條例 違反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도록 함(案 第20條).
- 라. 地方議員의 議政資料의 수집·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등을 補填하기 위하여 每月 議政活動費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案 第32條).
- 마. 地方議會議員이 職務로 인하여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에는 報償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案 第32條의2).
- 바. 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의 事務에 대하여 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查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각각 당해 地方議會가 그 監查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 필요한 경우 당해 地方議會의 監查結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案 第36條第3項).
- 사. 行政事務監查 및 調査시 虛偽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도록 하고, 出席要求를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試課함 수 있도록 함(案 第36條第5項).

- 아. 地方議會는 議會의 會議등 内部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案 第37條의2).
- 자.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의 定期會 및 臨時會의 會期를 現行보다 각각 5日을 연장하고, 年間 會議總日數도 각각 20日을 연장함(案 第41條).
- 차. 地方議會 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하도록 함(案 第83條第2項).
- 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然退職 사항을 規定함(案 第90條의2).
- 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再議決사항이 法令에 違反된다 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案 第98條).
- 파.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要件을 완화하고, 地方議會의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때부터 效力を 喪失하도록 함(案 第100條第3項).
- 하. 特別市와 直轄市의 副市長과 道의 副知事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人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1人은 政務職 또는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도록 하며,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과 副知事는 市·道知事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되 제청된 者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日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도록 함(案 第101條第1項 내지 第3項).
- 거. 市·郡·自治區의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고,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하되, 이 法 施

行후 遞초로 선출된 市長·郡守·區廳長의 任期滿了日까지는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도록 함(案 第101條第4項·附則 第5條).

- 네. 邑·面·洞長을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이 法 施行당시 재직중인 邑·面·洞長은 任期滿了日 또는 退任日까지 身分을 보장함(案 第109條第2項, 附則 第6條).
- 더.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의 設立은 地方公企業法과 상충되므로 이의 설립근거를 規定하고 있는 同條을 削除함(第138條 削除).
- 러. 地方自治團體 상호간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상호간의 紛爭등의 調整을 위하여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所屬하에 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를 설치하도록 함(案 第140條의2).
- 머.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 및 市·道委任事務의 관리 및 執行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職務履行命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職務履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7條의2).
- 버.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 監查할 경우 보고를 받거나 서류·帳簿 또는 會計를 監查할 수 있으며, 法令違反事項에 한하여 實施하도록 함(案 第158條).
- 서. 地方議會의 再議決 事項이 法令에 違反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大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고 그 議決의 執行을 停止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경우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提訴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도록 함(案 第159條第3項 및 第4項).

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實施時期를 1995年 6月30日이내에 實施하도록 함(案 附則 第2條).

저.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市·郡 및 自治區議會議員의 任期는 1995年 7月 1일부터 開始되며, 그 任期는 1998年 6月30日에 만료도록 함(附則 第3條).

처.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總選舉에 의하여 選出되는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의 議會議員의 任期는 1998年 6月30日에 만료도록 함(附則 第4條).

한국

法律 第 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

地方自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둔다.

第7條第2項 내지 第4項을 각각 第3項 내지 第5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이나,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을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住民投票)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불일 수 있다.

②住民投票의 대상·發議者·發議要件·기타 投票節次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9條第2項중 “15日” 을 “20日” 로 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①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 行爲에 대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를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 한다.

第22條 내지 第24條를 각각 刪除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6條의2(地方議會議員의 選舉) 地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議員의 議政活動費 등) ①地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다음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1. 議政資料의 蒐集·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 蒐集·研究를 위한 補助活動의 費用은 市·道議會議員에 한한다.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 지급하는 旅費
3. 會期중에 지급하는 會議手當

②第1項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의2(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職務(第53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3條第1項第3號중 “政黨法 第17條”를 “政黨法 第6條”로, 同條同項第4號중 “韓國銀行을”을 “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로, 同條同項第5號중 “第138條 또는 地方公企業法” 을 “地方公企業法” 으로 각각 하고, 同條同項第6號중 “山林組合”을 “林業協同組合”으로, “人蔘協同組合의 常勤任·職員”을 “人蔘協同組合(이 들 組合의 中央會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任·職員과 이 들 組合의 中央會長이나 聯合會長” 으로 하며, 同條同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教員
第34條의2중 “政府는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을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을 때에는 관계 搜查機關의 長은” 으로 한다.

第35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基金의 設置·運用

第35條의2第1項중 “地方自治團體의 長” 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으로 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行政事務監査 및 調査權) ①地方議會는 매년 1回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 事務中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調査를 發議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在籍議員 3분의 1이상의 連署가 있어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의 事務에 대하여 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 그 監査結果에 대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을 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나 그 事務에 관계되는 者를 출석하게 하여 證人으로서 宣誓한 후 證言하게 하거나 參考人으로서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言에서 虛偽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할 수 있으며, 第4項의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節次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

⑦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政監査및調查에 관한法律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第4項 및

第5項의 宣誓·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 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第2項後段중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을 “다만, 特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으로 한다.

第3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7條의2(議會規則) 地方議會는 會議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第39條第1項중 “選舉日로부터 25日이내에”를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부터 25日이내에”로 한다.

第41條第2項중 “35日”을 “40日이내”로, “30日”을 “35日이내”로, “10日”을 “15日”로 하고, 同條第3項중 “100日”을 “120日”로, “60日”을 “80日”로 한다.

第49條의 題目중 “決議”를 “議決”로 하고, 同條第1項중 “不信任을 決議”를 “不信任을 議決”로 하며, 同條第2項중 “不信任決議는”을 “不信任議決은”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不信任決議가”를 “不信任議決이”로 한다.

第83條第2項중 “議長과 協議하여”를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로 한다.

第86條第1項중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被選舉權이 있는 者중에서 住民이 직접 選舉한다.”를 “住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88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擅임할 수 없다.

1. 大統領, 國會議員, 憲法裁判所裁判官,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地方議會議員, 教育委員會의 教育委員
2.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林業協同組合·醫療保險組合·葉煙草生產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의 組合長과 그 任·職員
6. 教員
7.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과 地方公園의 任·職員
第90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0條의 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

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擅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

第91條를 削除한다.

第95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受任事務의 일부를 그 委任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地方自治團體나 補助機關, 所屬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第98條의 題目중 “再議要求”를 “再議要求와 提訴”로 하고, 同條第1項중 “法侖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를 “法侖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로 하고, 同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侖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99條第1項중 “그 이유를 불여”를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이유를 불여”로 한다.

第100條第1項 및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中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地方議會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決處分은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地方議會에서 第2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先決處分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 및 第3項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101條第4項 및 第5項을 각각 第5項 및 第6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 내지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 한다.

①特別市와 直轄市에 副市長, 道에 副知事,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둔다.

②特別市와 直轄市의 副市長, 道의 副知事는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特別市 와 直轄市의 副市長과 道의 副知事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1人은 政務職 또는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資格基準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副知事는 市·道知事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이 任命한다.

第102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103條第1項중 “內務部令”을 “大統領令”으로, “規則으로”를 “條例로”로 하고, 同條第4項중 “大統領令”을 “法律”로 하며, 同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第105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109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을 削除한다.

②邑長·面長·洞長은 一般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이 任命한다.

第110條중 “邑長·面長은 郡守의”를 “邑長·面長은 市長 또는 郡守의”로 한다.

第117條第2項중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를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로 한다.

第118條第1項중 “40日”을 “50日”로, “35日”을 “40日”로 한다.

第121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33條第1項중 “資金을 積立하거나 또는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를 “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同條

第2項중 “資金의 積立 및 基金의 設置·운영에 관하여”를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로 한다.

第138條을 削除한다.

第14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3項 내지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의 審議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③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調整의 決定을 한 때에는 이를 書面으로 지체없이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調整決定事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調整決定事項중豫算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地方自治團體는 이에 필요한豫算을 우선적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年次的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年度別 推進計劃을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項의 調整決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 또는 役務의 제공으로 이익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인정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는 그 施設費 또는 運營費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内務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決定事項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第15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第14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①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整과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事項의 調整에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 所屬하에 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이하 “調整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한다.

第146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한 調整委員會의 審議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第147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2項을 同條第3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協議會를 구성한 관계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第140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51條第2項을 同條第3項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組合會議는 組合이 提供하는 役務등에 대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을 第1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第15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7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한 職務履行命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 또는 市·道委任事務의 관리 및 執行을 명백히 懶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여는 市·道知事が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상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行政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履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履行命令書를 접수한 날부터 15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履行命令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第158條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이 경우 監查는 法令違反事項에 한하여 실시한다.

第159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項 내지 第6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④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사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 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 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

⑥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

法律 第4162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附則 第4條를 削除한다.

法律 第4310號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을 削除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選出되는 각 地方議會議員의 任期開始日부터, 第101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되는 각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始日부터, 第103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199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實施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는 1995年 6月 30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第3條(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市·郡 및 自治區議會議員의 任期는 1995年 7月 1일부터 開始되며, 그 任期는 1998年 6月 30일로 만료된다.

第4條(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選出되는 地方議會議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選出되는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第 3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6月 30日로 만료된다.

第5條(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01條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최초로 選出된 市長·郡守·區廳長의 任期滿了日까지는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市長·郡守·區廳長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第6條(邑長·面長·洞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在職중인 邑長·面長·洞長은 第109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日(勤務上限期間을 연장하는 任期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勤務上限期間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殘餘任期를 말한다) 또는 退任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對 比 表

現 行	改 正 案
<p>第3條(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③(생략) <u><新設></u></p>	<p>第3條(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管轄) ①~③(現行과 같음) <u>④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에는 都市의 形態를 갖춘 地域에는 洞을, 그 밖의 地域에는 邑·面을 둔다.</u></p>
<p>第7條(市·邑의 設置基準등) ①(생략) <u><新設></u></p>	<p>第7條(市·邑의 設置基準등) ①(現行과 같음) <u>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市와 郡을 統合한 地域이나, 人口 5萬이상의 都市形態를 갖춘 地域이 있는 郡을 都農複合形態의 市로 할 수 있다.</u></p>
<p>②~④(생략) <u><新設></u></p>	<p>③~⑤(現行第2項 내지 第4項과 같음) 第13條의2(住民投票)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 또는 住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地方自治團體의 주요 결정사항등에 대하여 住民投票에 불일 수 있다.</p>

第19條(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①(생 략)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條例案을 移送받은 때에는 15日
이내에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③~⑧(생 략)

第20條(罰則의 委任) 市·道는 당

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3月
이하의 懲役 또는 禁錮, 1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科料 또는 50萬
원이하의 過怠料의 罰則을 정할 수
있다.

<新 設>

<新 設>

②住民投票의 대상 · 發議者 · 發議

要件 · 기타 投票節次 등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9條(條例와 規則의 制定節次 등)

①(現行과 같음)

②----- 20日
----- .

③~⑧(現行과 같음)

第20條(條例違反에 대한 過怠料) ①

地方自治團體는 條例로써 條例違反
行為에 대하여 1千萬원이하의 過
怠料를 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
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管轄區域안의 地方自治
團體의 長이 賦課 ·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

을 받은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당해 地方
自治團體의 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
기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
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
한다.

<削 除>

第22條(選舉權) 選舉日 현재 20歲이
상인 國民으로서 選舉日 公告日 현
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안에 住民登錄이 된 者는 그
地方自治團體에서 실시하는 地方
選舉의 選舉權을 가진다.

第23條(被選舉權) ①地方選舉의 選舉
權이 있는 者로서 選舉日 현재 25

<削 除>

歲이상인 者는 地方議會議員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②地方選舉의 選舉權이 있는 者로

서 選舉日 前재 30歲이상인 者는

市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의

被選舉權을 가지며, 35歲이상인 者는

市·道知事의 被選舉權을 가진다.

③地方議會議員 또는 地方自治團體

의 長으로 立候補하고자 하는 者는

選舉日 현지 계속하여 90日 이상 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

登錄이 되어 있어야 한다.

第24條(選舉管理機關) 地方選舉의

選舉事務는 選舉管理委員會法에

의한 各級選舉管理委員會가 이를

管理한다.

<新 設>

第32條(議員의 報酬) ①地方議會議

<削 除>

第26조의2(地方議會議員의 選舉) 地

方議會議員은 住民의 普通·平等

直接·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

한다.

第32條(議員의 議政活動費 등) ①地

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會期중에
한하여 日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地方議
會의 會議(이하 "本會議"라 한다
) 또는 委員會에 출석할 때와 本
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
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旅行할
때에는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日費와 旅費
의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이 정하
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條例로 정한다.

<新 設>

方議會議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급한다.

1. 議政資料의 수집·研究와 이를
위한 補助活動에 소요되는 費用을
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議政活動費. 다만, 議政資料의 수
집·研究를 위한 補助活動의 費用
은 市·道議會議員에 한한다.

2. 本會議 또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에 의하여 公務로 여행
할 때 지급하는 旅費

3. 會期중에 지급하는 會議手當

②第1項各號에 規定된 費用의 지
급기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
로 정한다.

第32條의2(傷害·死亡등의 補償)

①地方議會議員이 會期중 職務(第5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開
會된 委員會의 職務와 本會議 또
는 委員會의 議決이나 議長의 명
에 의한 閉會중의 公務旅行을 포

第33條(兼職 등 금지) ① 地方議會議員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겸할 수 없다.

1. ~ 2. (생 략)
3.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政黨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公務員을 제외한다)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함한다)로 인하여身體에 傷害를 입거나 死亡한 때와 그 傷害 또 는 職務로 인한 疾病으로 死亡한 때에는 補償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補償金의 지급기준은 大統領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 한다.

第33條(兼職등 금지) ①- - - - -
- - - - - .

1. ~ 2.(現行과 같음)

3. - - - - -

- - - - - (政黨法 第6條의 - - - - -)

4. - - - - -

- - - - - (韓國放送公社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 - - - - -

5. 第138條 또는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
公園의 任·職員

6.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山
林組合·葉煙草生產協同組合·
人蔘協同組合의 常勤 任·職員

7. 政黨法第17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言論人 및 教員

②(생 賦)

第34條의2(議員 逮捕의 통지) 政府
는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
員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議長
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
를 통지하여야 한다.

5. 地方公企業法 -----

6. -----
----- · 林
業協同組合 · -----
人蔘協同組合(이들 組合의 中央會
와 聯合會를 포함한다)의 常勤 任
· 職員과 이들 組合의 中央會長
이나 聯合會長

7. 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教員

②(現行과 같음)

第34條의2(議員 逮捕의 통지) 逮捕
또는 拘禁된 地方議會議員이 있
을 때에는 관계 搜查機關의 長은

----- .

第35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

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1. ~ 4.(생 賦)

5. 基本財產 또는 積立金의 設置

· 管理 및 處分

6. ~ 10.(生 賦)

②(生 賦)

第35條의2(書類提出要求) ①本會議

또는 委員會는 그 議決로 案件의
審議와 직접 관련된 書類의 제출
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生 賦)

第36條(行政事務監查 및 調査權) ①

地方議會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監查하거나 그 事務중 特定
事案에 관하여 地方議會의 議決로
調査할 수 있으며, 監査 또는 調査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現地確認

第35條(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

-----.

1. ~ 4.(現行과 같음)

5. 基金의 設置 · 운용

6. ~ 10.(現行과 같음)

②(現行과 같음)

第35條의2(書類提出要求) 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

-----.

②(現行과 같음)

第36條(行政事務監查 및 調査權) ①

地方議會는 매년 1회 당해 地方自
治團體의 事務에 대하여 市 · 道에
있어서는 10日, 市 · 郡 및 自治區
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監査를 실시하고, 地方自治團體의

을 하거나 書類의 제출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補助機關의 출석·
證言이나 意見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調査를 하고자 할 때에는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連署로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發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事務중 特定事案에 관하여 本會議議決로 本會議 또는 委員會로 하여금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調査를 發議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在籍議員 3分의 1이상의 連署가 있어야 한다.

③地方自治團體 및 그 長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國家事務와 市·道의 事務에 대하여 國會와 市·道議會가 직접 監査하기로 한 事務를 제외하고는 그 監査를 각각 당해 市·道議會와 市·郡 및 自治區議會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會와 市·道議會는 그 監査結果에 대하여 당해 地方議會에 필요한 資料를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監査 또는 調査와 第3項

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書類提出을
요구할 수 있으며,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關係公務員이나 그 事務
에 관계되는 者를 출석하게 하여
證人으로서 宣誓한 후 證言하게
하거나 參考人으로서 의견의 陳述
을 요구할 수 있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證言에서

虛偽證言을 한 者에 대하여는 告發
할 수 있으며, 第4項의 출석요구를
받은 者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證言 또는 陳述을 거부하
는 때에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賦課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

節次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다.

⑦第1項의 監查 또는 調査와 第3項의
監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定監
查및調查에 관한法律에 준하여 大統領
령으로 정하고, 第4項 및 第5項의
宣誓·證言·鑑定등에 관한 節次는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 관한法律에
준하여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37條(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生 訣)

②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관계
公務員은 地方議會나 그 委員會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答
辯하여야 한다. 이 경우 地方
自治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
로 하여금 출석·答辯하게 할 수
있다.

③(생 訣)

第37條(行政事務處理狀況의 보고와

質問應答) ①(現行과 같음)

②-----

----- 다만,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地方自治
團體의 長은 關係公務員으로 하여
하여금-----.
③(現行과 같음)

<新 設>

第39條(臨時會) ①總選舉후 최초로
集會되는 臨時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選舉日로부터 25日 이내에
召集한다.
②~③(생 략)

第41條(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
數) ①(생 략)
②定期會의 會期는 市·道議會의
경우 35日, 市·郡 및 自治區 議
會의 경우 30日로 하고, 臨時會
의 會期는 10日이내로 한다.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期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
서는 10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第37條의2(議會規則) 地方議會는

會議 기타 内部運營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
한 사항을 規則으로 정할 수 있다.

第39條(臨時會) ①-----

----- 地方議會議員 任期開始日
부터 25日 이내에-----.
②~③(現行과 같음)

第41條(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
數) ①(現行과 같음)
②-----
----- 40日이내, -----
----- 35日이내-----
----- 15日-----.
③-----

----- 120日, -----
----- 80日-----
-----.

第49條(議長不信任의 決議) ①地方議會의 議長 또는 副議長이 法令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職務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議會는 不信任을 決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不信任決議는 在籍議員 4分의 1이상의 發議와 在籍議員 過半數의 賛成으로 行한다.
③第2項의 不信任決議가 있는 때에는 議長 또는 副議長은 그 職에서 解任된다.

第83條(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생 肄)
②事務職員은 地方議會의 議長과 協議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任命한다.

第86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被選舉權이 있는 者중에서 住民이 직접 選舉한다.

第49條(議長不信任의 議決) ①-----

----- 不信任을 議決-----
-----.

②-----不信任議決은-----

-----.
③-----不信任議決이-----

-----.

第83條(事務職員의 定員과 任命)

①(現行과 같음)
②----- 議長의
추천에 의하여-----
-----.

第86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①----- 住民의 普通·平等·直接
·秘密選舉에 의하여 選出한다.

②第1項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方法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88條(兼任등의 제한) ①地方自治團
體의 長은 國會議員 또는 地方議會
議員과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職을 兼任할 수 없다.

<削除>

第88條(兼任등의 제한) ①地方自治團
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職을 겸임할 수 없다.

1. 大統領, 國會議員, 憲法裁判所裁
判官, 各級選舉管理委員會委員, 地
方議會議員, 教育委員會의 教育委
員

2. 國家公務員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地方公務員法 第2條
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
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放送公社
와 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職員

5. 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農地改良組合·林
業協同組合·醫療保險組合·葉煙草
生產協同組合·人蔘協同組合의

組合長과 그 任·職員

6. 教員

7. 地方公企業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園의 任·職員

②(생 誉)

<新 設>

②(現行과 같음)

第90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

職)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職에

서 退職된다.

1.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兼任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

2.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

3.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

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

第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補闕)

選舉)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闕位된
때에는 2月이내에 補闕選舉를 실시
하고, 補闕選舉로 當選된 地方自治
團體의 長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
期間으로 한다. 다만, 残任期間이
1年미만인 경우에는 補闕選舉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第95條(事務의 委任등)

①~③(생 賦)

<新 設>

<削 除>

第95條(事務의 委任등)

①~③(現行과 같음)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 의 長은 受
任事務의 일부를 그 委任機關의 長
의 승인을 얻어 規則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地方自治團體나 補助
機關, 所屬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
機關에 다시 위임할 수 있다.

第98條(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
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越權 또는 法
律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그 議決事項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 15日이내에 이유를 불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생략)

新 設 <

第99條(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불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②~③(생략)

第98條(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
議要求와 提訴) ①-----
----- 法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
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日이내에
-----.
②(現行과 같음)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
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事項이 法令
에 違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
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
을 準用한다.

第10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地方議會가 成立되지 아니한 때, 地方議會를 召集할 時間의 여유가 없는 때, 地方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한 先決處分은 다음會期의 地方議會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新設>

<新設>

第100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地方議會를 召集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地方議會에서 議決이 지체되어 議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先決處分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決處分은 지체없이 地方議會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地方議會에서 第2項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先決處分은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 및 第3項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第101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特別市와 直轄市에 副市長, 道에 副知事を 두되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되 一般職 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③市·道의 副市長과 副知事는 당해 市·道知事が 추천한 者를 内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임명하고, 市의 副市長과 副郡守 및 副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임명한다.

第101條(副知事·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 ①特別市와 直轄市에 副市長, 道에 副知事, 市에 副市長, 郡에 副郡守, 自治區에 副區廳長을 두다.

②特別市와 直轄市의 副市長, 道의 副知事는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며, 그 職級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特別市와 直轄市의 副市長과 道의 副知事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人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1人은 政務職 또는 別定職 地方公務員으로 補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2項의 政務職 또는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는 副市長. 副知事는 市·道知事의 提請으로 内務部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가 없는 한 30日이내에 그 任命節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市의 副市長, 郡의 副郡守, 自治
區의 副區廳長은 一般職 地方公務
員으로 補하되, 그 직급은 大統領
수으로 정하며, 당해 市長·郡守·
區廳長이 任命한다.

④~⑤(생 략)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
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
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市·
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市·道知
事의 承認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②(생 략)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
地方自治團體에는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經費로서 負擔하는 地方公務
員을 두되, 그 定員은 内務部令이
정한 基準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
體의 規則으로 정한다.

⑤~⑥(現行 第4項 내지 第5項과
같음)

第102條(行政機構) ①地方自治團體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
한 行政機構를 두되, 市·道에 있
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
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고,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
서는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現行과 같음)

第103條(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 ①

----- 大統領令 -----

----- 條例로 ----- .

②~③(생 략)

④地方自治團體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公務員을 들 수 있다.

<新 設>

第105條(事業所) 地方自治團體는 특정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但書新設)

②~③(現行과 같음)

④-----
----- 法律 -----

⑤第4項에 規定된 國家公務員은 國家公務員法 第32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5級이상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6級이하의 國家公務員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長의 提請으로 所屬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第103條第1項의 定員範圍안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事業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117條(會計의 구분)

①(생 략)

②特別會計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第118條(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
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
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 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
始 35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第121條(追加更正豫算)

(本文 생략)

(新 設)

第117條(會計의 구분)

①(現行과 같음)

②-----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第118條(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

----- 50日 -----

----- 40日 -----

②~④(現行과 같음)

第121條(追加更正豫算)

①(現行 本文과 같음)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33條(財產 및 基金의 設置) ①
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
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產을 보유하거나, 資
金을 積立하거나 또는 基金을 設
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財產의 보유, 資金의
積立 및 基金의 設置·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
다.
③(생 략)

第138條(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
社 및 公團의 設立) ①地方自治
團體는 그 소관事務의 범위안에
서 필요한 때에는 内務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地方公企業이 아닌
地方公社 및 地方公團(이하 "地
方公社等"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内務部長官이

第133條(財產 및 基金의 設置) ①

----- 특정
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③(現行과 같음)

<削 除>

地方公社등의 設立을 承認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公社등의 設立·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
다.

第140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
爭 調整) ①(생 賦)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當事者の 의견을 들
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
議하여야 한다.

<新 設>

第140條(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紛
爭 調整) ①(現行과 같음)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紛爭을 調整하고자 할
때에는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
한 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
의 審議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③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調整의 決定을 한 때에
는 이를 書面으로 지체없이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통보를 받은 地方自治

<新 設>

團體의 長은 그 調整決定事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調整決定事項중 豊算
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
계 地方自治團體는 이에 필요한
豫算을 우선적으로 編成하여야
한다. 이 경우 年次的으로 추진
하여야 할 사항은 年度別 推進計
劃을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
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 設>

⑤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은
第1項의 調整決定에 의한 施設의
設置 또는 役務의 提供으로 이익
을 받거나 그 원인을 야기하였다
고 인정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
하여는 그 施設費 또는 運營費등
의 전부 또는 일부를 内務部長官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新 設>

⑥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은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決定事項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第15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하여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新 設>

第140條의2(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의 設置) ①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整과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事項의 調整에 필요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 소속하에 地方自治團體紛爭調整委員會(이하 "調整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 또는 條例로 정한다.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 ①(생 賦)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地方自治團體의 長

第146條(協議事項의 調整)

- ①(現行과 같음)
②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을 하고자 할 때에 第140條의2의 規定에

의 의견을 들어 관계 中央行政機關
의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協議會를 구성한 관계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나 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新設>

②(생략)

第151條(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①(생략)

<新設>

의한 調整委員會의 審議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야 한다.

第147條(協議會의 協議 및 事務處理의 效力) ①協議會를 구성한 관계 地方自治團體는 協議會가 決定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事務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第1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調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第140條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現行 第2項과 같음)

第151條(組合會議와 組合長의 權限)

①(現行과 같음)

②組合會議는 組合이 提供하는 役務등에 대한 使用料·手數料 또는 分擔金을 第130條第1項의

②(생 략)

<新 設>

規定에 의한 條例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現行 第2項과 같음)

第157條의2(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
한 職務履行命令) ①地方自治團體
의 長이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그
義務에 속하는 國家委任事務 또는
市·道委任事務의 관리 및 執行을
명백히 懶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道에 대하여는 主務部
長官이, 市·郡 및 自治區에 대하
여는 市·道知事が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命敘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第1項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負
擔으로 代執行하거나 行政·財政上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
우 行政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
代執行法을 準用한다.

第158條(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대한 監查)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地方自治團體의 自治事務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書類·帳簿 또는 會計를 監查할 수 있다. <但書新設>

第159條(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②(생 략)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履行命令에 異議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日 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履行
命令의 執行을 정지하게 하는 執行
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第159條(地方議會 議決의 再議와
提訴) ①~②(現行과 같음)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

된 事項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
단되는 때에는 市·道知事는 内
務部長官의, 市長·郡守 및 自治
區의 區廳長은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 再議決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提起
할 수 있다. 이 경우 議決의 效
力은 大法院의 判決이 있을 때까
지 정지된다.

<新 設>

<新 設>

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事項이 法
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
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停止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④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再議決된 事項이 法令에 違反
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
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당해 地方自
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
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
을 申請할 수 있다.

⑤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지시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이내에 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新 設>

附 則(法律 第4162號)

第4條(市.道의 副市長.副知事의 任

命에 관한 經過措置) 市.道의 副
市長. 副知事는 第101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市·道知事의 任期
滿了까지는 內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
다.

附 則(法律 第4310號)

第2條(地方選舉의 實施時期)

①(생 誓)
②이 法에 의한 최초의 市·道知
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
廳長의 選舉는 1992年 6月 30日
이내에 實施한다.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提訴하

여야 한다.

⑥內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

는 第5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

터 7일이내에 직접 提訴할 수

있다.

<削 除>

第2條(地方選舉의 實施時期)

①(現行과 같음)

<削 除>

附 則

<新 設>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

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改正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
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선출
되는 각 地方議會議員의 任期開始
日부터, 第101條第3項의 改正規定
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始
日부터, 第103條第4項의 改正規定
은 199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

第2條(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實施時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
의 長의 選舉는 1995年 6月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第3條(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에 의
한 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市
·郡 및 自治區議會議員의 任期는
1995年 7月 1일부터 開始되며, 그
任期는 1998年 6月 30일로 만료된
다.

第4條(이 法 시행후 최초로 實施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總選舉로 선출되
는 地方議會議員의 任期에 관한 經
過措置)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실시
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선출
되는 地方議會議員의 任期는 第31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98年 6月
30日로 만료된다.

第5條(副市長·副郡守·副區廳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01條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선출된 市長·郡守
·區廳長의 任期滿了日까지는 副
市長·副郡守·副區廳長은 一般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副市長.
副郡守·副區廳長은 당해 市長·郡
守·區廳長의 提請으로 內務部長官
을 거쳐 大統領이 任命한다. 이
경우 提請된 者에게 法的 缺格事由
가 없는 한 30日이내에 그 任命節
次를 종료하여야 한다.

第6條(邑長·面長·洞長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의 在職중인 邑長·面長·洞長은

第109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任期滿了日(勤務上限期間을

延長하는 任期는 포함되지 아니한

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勤務上

限期間을 延長한 경우에는 그 殘

餘任期를 말한다) 또는 退任日까

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공백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 法司委體系·字句整理內容

代 案	體系・字句整理內容
<p>第95條(事務의 委任등)</p> <p>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委任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第95條(事務의 委任등)</p> <p>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任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受任事務의 일부를 그 委任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地方自治團體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다시 委任할 수 있다.</p>
<p>第159條(地方議會議決의 再議와 提訴)</p> <p>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決된 事項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再議決된 날부터 20日이내에 大法院에 訴를 提起할 수 있다. 이 경우 提訴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의 執行을 停止하게 하는 執行停止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p>	<p>第159條(地方議會議決의 再議와 提訴)</p> <p>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 필요하다고 -----</p>

代 案	體系・字句整理內容
<p>④再議決된 事項이 法令에 違反 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도 당해 地 方自治團體의 長이 訴를 제기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당해 地方自 治團體의 長에게 提訴를 지시하 거나 직접 提訴 및 執行停止決定 을 申請할 수 있다.</p>	<p>④ 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再議決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 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地方自治團體 의 長이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 ----- ----- ----- .</p>
<p><u><新設></u></p>	<p>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提訴의 指示는 第3項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日 이내에 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提訴指示를 받은 날부터 7日 이내에 提訴하여야 한다.</p>
<p><u><新設></u></p>	<p>⑥内務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p>

代 案	體系・字句整理內容
<p style="text-align: center;"><u>附 則</u></p> <p>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 터 施行한다. 다만, 第32條의 改正 規定은 이 法 施行후 <u>최초로</u> 선출 되는 각 地方議會議員의 任期開始 日부터, 第101條第3項의 改正規定 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開始 日부터, 第103條第4項의 改正規定 은 1995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p>	<p>第1條(施行日)----- ----- ----- <u>최초로</u> 實시되는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선출되는 ----- ----- ----- ----- ----- ----- -----.</p>
<p>第2條(<u>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 實施時期</u>) <本文생략></p>	<p>第2條<<u>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舉実施時期에 관한 経過措置</u>></p>
<p>第3條(<u>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u>) <本文생략></p>	<p>第3條<<u>최초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任期에 관한 経過措置</u>></p>
<p>第4條(이 法 시행후 최초로 實施되는 總選舉에 의하여 選出되는 地方議 會議員의 任期) 이 法 시행후 최초 로 實시되는 總選舉에 의하여 選出 되는 市·道와 市·郡 및 自治區의 議會議員의 任期는 第31條의 規定 에 불구하고 1998年 6月 30日로 滿了된다.</p>	<p>第4條<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選出되는 地方 議會議員의 任期에 관한 経過措置> -----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로 선출 되는 地方 ----- ----- ----- -----.</p>